

#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

의안  
번호 1753

제출년월일 : 2008. 10. .  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##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된 조례 규정을 정비하고, 현행 조례 상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.

## 주요내용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 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함(안 제1조·제3조 및 제9조).
- 나. 시의회 의원인 위원의 경우 일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(안 제10조).
- 다. 일 70,000원인 일비의 지급기준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함(안 제13조).

## 개정조례안 : 별 첨

##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 첨

## 관계법령발췌

- 「지방자치법시행령」 제83조

## 예산수반사항 : 12,000천원

## 사전예고 : 생략

- 근거 : 『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』 제3조제3호

## 기타 참고사항 : 별 첨

-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계획(회계과-16307호)
- 공무원여비규정 지급구분표
- 국내여비 정액표

# **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**

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,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34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제84조”로 한다.

제3조제3항 중 “지방의회”를 “시의회”로 하고, “지방자치법 제56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64조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당해”를 삭제한다.

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대표위원은 시의회 의원인 위원으로 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지방공기업법”을 “「지방공기업법」”으로 한다.

제8조 중 “지방자치단체의 장”을 “시장”으로 한다.

제9조 중 “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 제3항”을 “「지방자치법시행령」 제84조제3항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위원에게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동안 일비를 지급한다. 다만, 시의회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2조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된다.” 를 “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을 포함한다.”로 한다.

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3조(지급기준) ① 위원의 일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.

② 여비는 「공무원 여비규정」 별표 1. 여비지급 구분표상의 부시장 상당을 적용하여 「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」에 따라 지급하되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사항은 「공무원 여비규정」에 따른다.

#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회계과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회계과장 김시호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경리담당 박광옥
	담당자 성명·전화	박은주 (행정 3071)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b>제1조(목적)</b> 이 조례는 <u>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,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(이하“위원”이라한다)의 선임 및 운영등에 관한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	<p><b>제1조(목적)</b> 「<u>지방자치법</u>」 제134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제84조 ----- ----- -----.</p>
<p><b>제3조(선임방법 및 절차)</b> ①~② 생략  ③ 위원은 시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<u>지방의회</u>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<u>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다.</u></p>	<p><b>제3조(선임방법 및 절차)</b> ①(현행과 같음) ③ ----- 시의회 ----- 「<u>지방자치법</u>」 제64조 -----.</p>
<p><b>제5조(겸임금지 및 결격)</b> ① 위원은 <u>당해 시의 상근 직원을 겸할 수 없다.</u></p>	<p><b>제5조(겸임금지 및 결격)</b> ① 위원은 <u>시의 상근 직원을 겸할 수 없다.</u></p>
<p><b>제6조(대표위원)</b> ① <u>위원중에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시의회의 의원이 위원이 된다.</u>  ②~③ (생략)</p>	<p><b>제6조(대표위원)</b> ① <u>대표위원은 시의회 의원인 위원으로 한다.</u> ②~③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7조(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)</b> ① 생략  ② <u>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<u>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.</u></u></p>	<p><b>제7조(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)</b> ①현행과 같음 ② 「<u>지방공기업법</u>」 ----- ----- 「<u>지방공기업법</u>」 ----- -----.</p>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제8조(검사협조)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</u></p>	<p><u>제8조(검사협조) 시장-----</u>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
<p><u>제9조(검사의견서 제출)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.</u></p>	<p><u>제9조(검사의견서 제출) 「지방자치법시행령」 제84조제3항의 -----</u></p> <p>-----.</p>
<p><u>제10조(일비의 지급)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. 다만, 시의회의 위원인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</u></p> <p>② 생략</p>	<p><u>제10조(일비의 지급) ① 위원에게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동안 일비를 지급한다. 다만, 시의회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u></p> <p>②(현행과 같음)</p>
<p><u>제11조(일비의 계산) ① (생략)</u></p> <p>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된다.</p>	<p><u>제11조(일비의 계산) ① (현행과 같음)</u></p> <p>②-----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을 포함한다.</p>
<p><u>제13조(지급기준) ① 위원의 일비는 70,000원으로 한다.</u></p> <p>②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제3조의 별표 1 "여비지급구분표"상 제2호 상당액을 지급한다.</p>	<p><u>제13조(지급기준) 위원의 일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.</u></p> <p>② 여비는 『공무원여비규정』 별표1. 여비지급 구분표상의 부시장 상당을 적용하여 『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』에 따라 지급하되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사항은 『공무원여비규정』에 따른다.</p>